

1. 제안이유

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·재산을 위협하고 긴급대응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있으며,

「소방기본법」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나, 하위법령인 시행령 [별표3]에는 여전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의 불일치 및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소방기본법 시행령” [별표3] 2. 개별기준 라항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“과태료 금액(만원) 100”을 “과태료 금액(만원) 1회 100, 2회 150, 3회 200”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(안 별표 3)

-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·결정례의 요약,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, 특정사건의 경위,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56조제2항 제3호의2	100	150	200
--	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
소방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1. 일반기준 가.----- ----- 2. 개별기준 가.----- ----- 라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 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	소방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2. 일반기준 가.----- ----- 2. 개별기준 가.----- ----- 라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 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d><td colspan="3">과태료 금액(만원)</td></tr><tr><td>1회</td><td>2회</td><td>3회이상</td></tr><tr><td>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</td><td colspan="3">100</td></tr></table>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	1회	2회	3회이상	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	100			<table><tr><td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d><td colspan="3">과태료 금액(만원)</td></tr><tr><td>1회</td><td>2회</td><td>3회이상</td></tr><tr><td>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</td><td>100</td><td>150</td><td>200</td></tr></table>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	1회	2회	3회이상	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	100	150	200
근거 법조문	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
	1회	2회	3회이상																				
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	100																						
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	
	1회	2회	3회이상																				
법 제56조제2 항제3호의2	100	150	200																				